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64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다년생 작물에 대한 비과세 소득규정 신설(임호선의원안) ...	2

I. 개요

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6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3.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다년생 작물에 대한 비과세 소득규정 신설(임호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 사업소득 (제12조제2호) ☐ <신 설>	☐ 다년생 작물에 대한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안 제2호아목 신설) ☐ 인삼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 * 재배연수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시행일: 공포일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임호선의원안 2025. 9. 3. 발의 (의안번호 12640)

☐ 개정안은 인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해당 소득의 재배 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려는 것임.

☐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나, 작물을 수확하는 해에 다년간 재배한 작물에 대한 수익이 일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득세법」상 누진구조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또한 ①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은 소득의 전액이 매년 비과세되고, ② 채소, 화훼, 과일, 음료용 작물 등 시설작물 재배업도 연 단위로 10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 비해, 다년생 작물은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 작물에 비해 「소득세법」상 불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다년생 작물의 재배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첫째, ‘다년생 작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참고할 경우 ‘다년생 작물’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정안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법령 중 ‘다년생 작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농지법 시행령」이 ‘다년생 식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¹⁾. 그런데 동 시행령에 규정된 다년생 식물 중 ① 과수·뽕나무·유실수 등과 같이 다년생 식물이면서 매년 수확하는 식물의 경우 연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개정안과 같은 보호 필요성이 낮고, ② 목초, 종묘, 잔디, 조림용 묘목, 조경·관상수 등은 ‘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의 취

1)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지상 보호 필요성이 있는 다년생 식물은 인삼, 약초 등과 같이 다년간의 재배 기간이 요구되나, 한 번의 수확으로 재배가 종료되는 식물(다년 1기작)일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작물”로만 정의하고 있어 문언만으로는 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음.

둘째, 현재도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폭넓게 비과세 중이므로 업종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대상의 범위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소득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²⁾,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 및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농어가 부업 소득은 비과세되고 있어, 어업·임업 등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과세 대상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어 있음.

또한, 양식어업, 임업, 축산업 등 다년간의 육성을 통해 생산물을 취득하는 다른 업종에도 유사한 내용의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설에 대해서는 타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주요 농업·어업·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농업	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전액 비과세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축산업	소 사육업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양돈업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70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임업	임목 벌채·양도 소득	-	연 600만원 이하

문 의 처

02)6788-5149